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#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발의자 : 김 호 경 의원 등 7인

### 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8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1일

### 3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 법규 등을 변경하고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#### 가. 관계 법규 변경(안 제4조 및 제16조)

- 「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」 →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- 「소방장비관리규칙」 →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

#### 나.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 신설(안 제4조의2)

####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(안 제2조 및 제12조)

### 5. 검토내용

#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소방관리장비법 시행규칙」 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·관리에 관한 소방서장의 지도·감독 실시 의무에 관한 변경된 근거 규정반영 및

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준용되는 근거 규칙을 명확히 하고,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반장·부장을 임명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,

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련 자치법규 명칭 변경 및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 신설에 대한 사항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 - 제2조제2항 본문 중 “법” 을 “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으로 개정함
  - 제2조제3항 본문 중 “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” 을 “규칙 제2조제 2항”으로 개정함.
  - 제2조제4항 중 “규칙 제2조제2항” 을 “규칙 제2조제2항”으로 개정 함.
  - 제4조제4항 중 “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” 을 “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개정함.
  -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제4조의2(반장·부장의 자격 기준) 대원에서 반장,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,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,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제12조제3항 본문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 을 “사람” 으로 개정함.
  - 제16조제2항 중 “「소방장비관리규칙」” 을 “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” 으로 개정함.
  - 제18조제6항 중 “한국소방안전협회” 를 “한국소방안전원” 으로 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2. 9. 2. ~ '22. 9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련 자치법규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